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18. 3. 27. 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-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개정안 제2조)
 - 1) 지방공무원 총수: 3,135명 → 3,175명 (40명 증원)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개정안 제4조, 별표3)
 - 1) 일반직공무원: 2,883명 → 2,908명 (5급 이하 25명 증원)
 - 2) 교육전문직원: 236명 → 251명 (5급상당 이하 15명 증원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,
- 학교폭력예방, 교원치유지원센터, 마음건강지원센터, 다문화지원센터 지원 등 지역현안 및 교육행정 수요에 의해 일반직공무원 25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5명 등 총 40명 증원으로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,175명이며,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인 3,183명 범위 내의 정원책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